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9.

발 의 자 : 서영석 · 윤준병 · 김승원
한정애 · 이성윤 · 노종면
윤종균 · 박선원 · 김주영
진성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, 이 때 재산의 범위는 토지, 건축물, 주택, 국내 금융재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.

이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,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, 제10조제2항,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).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후단 중 “정하고”를 “정하되 재산의 범위에는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고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가상자산정보”라 한다)
5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(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에 한한다) 중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해외금융계좌정보”라 한다)

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신용정보 및 보험정보”를 “신용정보, 보험정보, 가상자산정보 및 해외금융계좌정보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”을 “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

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,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국세청”으로, “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”를 “금융정보·신용정보·보험정보·가상자산정보 또는 해외금융계좌정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③ · ④ (생략)

제11조(조사·질문 등) ①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가상자산정보”라 한다)

5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(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에 한한다) 중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해외금융계좌정보”라 한다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조사·질문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